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03월 16일

동화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남**	남** 1992-03-19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3-27
유**	김** 1969-08-02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3-27
고**	고** 1975-09-22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다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3-27